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핀셋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- 변경 사항 : ①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 ②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 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 ④ 반기 기준으로 갱신

□ 효력발생일: 2024. 10. 17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요약정보			
-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, 이자율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		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8. 30. 기준</u>
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4. 6. 18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9. 30. 기준</u>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</u>

		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</u> <u>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지 않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9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9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 년 경과 내역 삭제	책임운용역 : 이경은 (2020.09.10~2021.03. 18)	<u>〈삭 제〉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 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 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 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 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</u> <u>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 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 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 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 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위험 가. 일반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 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 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 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 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 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따라 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 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

		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	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								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(신 설)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<u>〈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〉</u> <table><tr><td rowspan="2">중도 환매 불가</td><td colspan="2">중도환매 허용</td></tr><tr><td>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</td><td>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</td></tr><tr><td>-</td><td>-</td><td>○</td></tr></table>	중도 환매 불가	중도환매 허용		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	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	-	-	○
중도 환매 불가	중도환매 허용										
	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	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									
-	-	○			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8. 30. 기준</u>					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200만원</u> 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1,200 만원</u>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<u>23.1.1</u>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500만원</u> 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1,500 만원</u>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<u>24.1.1</u>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								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							
1. 재무정보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4. 6. 18. 기준</u>								
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4. 6. 18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4. 6. 18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 회사연혁 추가	- (신 설)	<u>2024. 9. 30. 기준</u> <u>2022.11 종합자산운용회</u> <u>사로 전환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5 기(2022.12.31)</u> <u>제 24 기(2021.12.31)</u>	<u>제 26 기(2023.12.31)</u> <u>제 25 기(2022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9. 30. 기준</u>